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 선고 2021가합70236(본소), 2021가합72300(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과오입금 반환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헤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8.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7,097,7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3,209,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9. 피고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C 상하행 각 휴게소에 위치한 D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매장 내 각종 집기, 상품 등을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다른 매장도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앞으로 나오는 매장은 D 이름으로 인수해준다.
3. 완벽할 때까지 사후관리해준다.
4. 도너스기계까지 넣어준다. 8월 1일부터 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중 특약 제3항(이하 ‘사후관리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대신 운영하면서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입금하던 중 2020년 12월경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 등 72,813,477원을 공제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 위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휴게소 관리회사와 체결한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영업권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사후관리 약정에 반하여 증빙자료 없이 각종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다가 2015년 11월경부터는 사후관리를 못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원고로 하여금 매장 운영비용을 직접 지출하게 하였고, ③ 도너츠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해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④ 원고가 E휴게소의 매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출액에서 부당하게 경비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하는 등 사후관리약정에 따른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이 사건 계약을 더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부당하게 경비로 공제한 직원 급여 155,892,870원, 매출액 중 미지급한 79,999,935원, 정산내역에서 누락된 과세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41,204,927원 등 합계 377,097,732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장은 피고가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회사로부터 수수료 매장1) 방식으로 임차하여 운영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매장의 계약명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그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도너츠기계 미제공이나 다른 휴게소 내 매장 인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정산문제로 피고와 다툼이 생겨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거의 7년여 동안 그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상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가 도너츠 기계를 넣어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이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세금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입금하여 온 사실은 위 1.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그 주장의 정산금을 미지급하는 등 사후관리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후관리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하면서 세무사 기장료, 은행 수수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73,209,618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과오입금된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그 책임과 권한 하에 매장 매출액에서 각종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2020년경 피고에게 정산금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경비의 과다공제에 관하여 주장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그 주장과 같은 금액이 과다공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한홍, 판사 이균철, 판사 김주석

1) 매달 일정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주로 사용된다.